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0. . .
발 의 자	김재우 의원 외 11명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재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0. . .

발의자 : 김재우 · 권재욱 · 김춘남 · 박교상
송용자 · 안장환 · 안주찬 · 이선우
이지연 · 장미경 · 최경동 · 홍난이
의원(12인)

1. 제안이유

구미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민참여토론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 및 회의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라. 시민참여토론회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회의 운영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기 타 : 조례안 예고(2020. 1. 13. ~ 1. 20.) 결과 의견없음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토론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회의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토론주제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란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 참여 확대 및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회의는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시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운영) ①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상정할 의제는 시민, 단체 등이 제안한 의제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③ 회의 참여자는 일반시민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분야 전문가는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④ 회의 참여자 선정 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결과 조치) ① 회의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는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 추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의제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전

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회의 운영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 (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토론회의 개최 비용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새마을과 시민협치계 강홍구(480-6813)